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최고인민법원, 「식·약품 분쟁사건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지난 1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약품 분쟁사건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식·약품사법해석')을 공포하여 (i)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ii) 증정품에 의한 권리침해도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iii) 소비자는 허위광고에서 상품을 추천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iv) 인터넷쇼핑몰 플랫폼의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식·약품사법해석'은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사부 「노무파견잠행규정」 공포

지난 1월 26일, 중국 인사부는 「노무파견잠행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파견된 근로자의 수는 사용자 근로자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2년의 과도기를 부여하였습니다.

공상총국 「인터넷거래관리방법」 공포

최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공포하여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법'은 인터넷 상품의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SNS를 통한 유

료 홍보서비스, 상품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당 홍보, 상품평가의 유료 성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무원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

최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행에 대한 통지」(이하 '방안')를 발표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의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의 실행을 공포하였습니다. '방안'은 등록자본금 납부승인제도의 실시, 회사 최저등록자본금제도의 취소, 기업 연도검사제도를 연도보고·공시 제도로 변경, 회사 주소지 등기절차의 간이화, 전자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의 보급 등 사항들에 대한 개혁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